

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-86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9. 2.
제출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신적·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의 위탁사무를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노인복지법 제3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(운영의 위탁 등)

2) 필요성

- 노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 선정으로 노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에서 경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

- 1)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2)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3) 재가노인복지사업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소재지: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8-14(상수동) (☎ 02-325-3850)
- 2) 시설현황
 - 건물규모: 지하1층/지상3층(지상 2,3층 사용)
 - 면적: 750.31 m²(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면적)
 - 층별현황

층별	용도	면적(m ²)	비고
계		1,924.29	
3층	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(대강강, 휴게실)	300.38	750.31
2층	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(센터장실,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, 프로그램실, 자원봉사자실, 조리실)	449.93	
1층	어린이집	477.02	
B1층	주차장, 기계실, 서강동 주민자치회관(별관)	696.96	

3) 위치도 및 전경

<p>위치도</p>	<p>전경</p>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 1. 1. ~ 2027.12.31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(재계약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1) 소요예산: 2,256,722천원(국비 855,629천원, 시비 873,843천원, 구비 527,250천원)

2)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계	2,256,722		
운영비	314,934	· 재가노인시설 운영비: 252,434천원 · 마포어르신돌봄 운영지원비: 62,500천원	시비(80%) 구비(20%)
사업비	1,941,788	· 노인맞춤돌봄(돌봄시비, IOT 포함): 1,677,788천원 ·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: 184,680천원 · 무료급식지원사업: 79,320천원	국비(44%) 시비(32%) 구비(24%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2,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1)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(서울시)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
- 2) 추진일정안
 -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: '22. 10. 27
 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선정): '22. 11. 10.
 - 재계약 체결: '22. 11. 16.

3. 참고사항: 관계법령

[노인복지법]

제3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[사회복지사업법]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[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